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마을공동시설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함(안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 서비스 시설로 운영하는 마을공동시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서비스 시설로 운영하는 마을공동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857